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64
----------	------

2019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5일, 김달호 의원 외 14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달호 의원)

- 가. 제안이유
 -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수요밀집도가 낮은데 따른 경제성 부족,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소외지역이 고착화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이에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 (안 제4조).
-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조체계 구축·운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의 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지역 주민들이 공급시설 설치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서울시의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추진 계획

-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¹⁾에서 가장 높은 98.2%로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일부 미공급지역이 존재함.

'18년 8월부터 5개월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공급 지역은 14개구 1,698세대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산동네에 속해 있고 노후 건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스배관 공사 시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설치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특성〉

- 배관이 사유지 통과 지역이 많으며 토지소유주 사용 승낙 협의 어려움
- 대부분 지역이 산동네 등으로 배관공사 비용 과다 소요
- 노후 건물이 많아 공사 시 붕괴 위험 등 안전문제 우려 및 좁은 골목길 공사 어려움
-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인 경우 공사비용 이중 부담 우려



세검정로4길(고지대, 압반)



홍은중앙로3길(고지대, 계단)



1)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 83%(18,305,553세대/22,042,947세대)

- 서울시는 '19년 3월부터 '20년 12월까지 14개구 1,698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사업은 우선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로 진행되고 사업진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연차별로 반영(19년도 37억 6백만원 반영)할 계획임.

<서울시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수(19년 11월말 현재)>

상 호	자치구	행정동	대상세대수	미공급 세대수 ('19.10월말기준)	비고
총 계			1,698	1,475	
서울 도시가스	소 계		709	706	4개 자치구 8개동
	종로구	부암동	49	46	
		평창동	24	24	
	용산구	한강로동	34	34	
		서빙고동	50	50	
	서대문구	홍제2동	43	43	
		홍제3동	160	160	
	서초구	방배2동	258	258	
방배4동		91	91		
코원 에너지 서비스	소 계		80	80	1개 자치구 2개동
	강동구	강일동	60	60	
		천호2동	20	20	
에스코	소 계		524	484	5개 자치구 14개동
	종로구	청운효자동(옥인동)	120	120	
		창신1동	5	5	
		사직동	5	5	
	성동구	사근동	25	25	
		마장동	100	100	
	중랑구	망우본동	50	50	
		보문동	20	20	
	성북구	삼선동	51	46	
		성북동	7	7	
		정릉2동	62	62	
		정릉3동	30	30	
동대문구	정릉4동	14	14		
	제기동	25	완료		
	용신동(용두동)	10	완료		
대륜 이엔에스	소 계		311	197	4개 자치구 9개동
	노원구	월계3동	20	20	
		도봉구	도봉2동	80	
	강북구	쌍문1동	10	10	
		미아동	40	완료	
		삼양동	127	63	
		수유2동	6	6	
	성북구	우이동	8	8	
		월곡1동	10	완료	
장위2동		10	10		
귀뚜라미 에너지	소 계		74	8	2개 자치구 2개동
	구로구	구로동	66	완료	
	금천구	시흥동	8	8	

2)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동감함.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부정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다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사업’을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 예산지출을 없지만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한편, 일부 부정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임.

구 분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제1항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u>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에 따른 <u>수급자</u> <u>65세이상</u>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에 따른 <u>수급권자</u> <u>65세 이상</u>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일부 부정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64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부정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골자

- 부정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히 함
(안 제3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를 “미공급지역의 공급
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생략)</p> <p>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2. (생략)</p> <p>3. 65세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p> <p>4. ~ 6.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p> <p>2. (생략)</p> <p>3. 65세 이상 -----</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촉진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공급비용”이란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과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맞는 투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
2. 경제성 미달지역
3.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3.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협조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